

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「부패재산몰수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*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이 4. 23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* 현행 「부패재산몰수법」은 범죄단체조직·유사수신·다단계·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·배임의 경우에만 몰수·추징하여 피해자 환부 가능

개정안은 「부패재산몰수법」상 ‘부패범죄’, ‘범죄피해재산’의 전제범죄에 일정 ‘대부업법위반죄’*를 추가하여,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·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* 「대부업법」 제19조 제2항 제2호(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및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범행)

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,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,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·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,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정성호 법무부장관은 “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”이라며, “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·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
담당 부서	검찰국 국제형사과	책임자	과 장 이지연 (02-2110-3553)
		담당자	검 사 황익진 (02-2110-3554)

